

국가기록혁신과 기록담론

Archives and Discourse

이영남(Lee, Young-nam)*

1. 머리말
2. 기록제도
 - 1) 사회제도
 - 2) 회복적 정의
3. 기록언어
 - 1) 담론의 공간
 - 2) 기록언어의 양상과 의미
4. 기록관행
 - 1) 사서와 도서관의 관행
 - 2) 관행의 고고학
5. 맺음말

*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조교수.

■ 투고일 : 2018년 3월 31일 ■ 최종심사일 : 2018년 4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4월 25일

〈초록〉

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법·제도, 인력과 조직,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반적이다. 물론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런 요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기록혁신을 위해 법제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제로 환원되지 않는 다른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심화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기록담론을 다뤘다. 기록담론의 관점에서 ‘국가기록관리 혁신 TF’의 활동과 최종보고서를 분석하면서 기록혁신의 방향성과 의미를 짚어보았다.

주제어 : 담론, 기록담론, 기록혁신, 언어, 관행, 기록정의, 옹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

〈Abstract〉

Archives Innovations have been generalized by the legislative system since 1999 in Korea. Although the legislative system is necessary to develop national archives system, it seems to be true in most situations or for most people. This study argued that it may not be completely true in all cases. And this study aimed discourse for more discussions about archives.

Keywords : discourse, archival discourse, language, practice, custom, restorative justice, archives justice

1. 머리말

국가기록관리 혁신활동이 진행 중이다. 시작점은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이하 ‘혁신TF’)가 활동을 개시했을 때일 것 같다. 혁신TF는 14명의 외부 전문가와 9명의 지원팀(국가기록원)으로 구성되어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활동했다. 그 후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되어 2018년 2월 26일에 국가기록원에 제출되었다. 이번 혁신TF 활동은 <공공업무-공공기록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이제부터는 공공기록관(이 글에서 공공기록관은 공공기록관리법과 대통령기록관리법에서 정한 기록물관리기관을 의미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도 포함된다)이 주체가 되어 법·제도혁신(공공기록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올바른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이 과정을 보증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혁신: 이하 제도혁신)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혁신은 중요하다. 공공기록 관리를 지탱하는 법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기록관리를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법·제도, 인력과 조직,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최종보고서). 필자 역시 이런 문제의식으로 혁신TF에 참여했다. 그러나 하나의 문서철이 종결되어 기록관으로 이관한 후에는 다른 빈 문서철을 꺼내 새로운 업무를 하나씩 기록해나 가야 하듯이, 혁신TF 활동이 일단락된 다음부터는 다른 관점으로 기록혁신을 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공공기록관이 집행하는 제도혁신이 기록혁신을 구성하는 하나의 계열이라면, 또 다른 계열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언어와 다른 정서로 논의하는 와중에 나올 것 같다.

1960년 4·19 직후의 일이다. 시인 김수영은 혁명은 방법부터가 혁명적이어야 한다며 2공화국을 비평하기 시작했다. ‘새까맣게 손때가 묻은 기존의 육법전서를 표준으로 삼아 정부가 혁명과업을 진행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김수영은 ‘합법적인 불법’이 필요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김수영이 문제로 삼았던 법제적 틀이 무엇인지 그가 필요하다고 했던 불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방안일 수 있겠는가, 제도화가 되지 않을 비현실을 말하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이런 종류의 그물망에 포획된 채 논의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는 읽힌다. 혁명이든 혁신이든 개혁이든 변화의 이름 앞에는 이런 의지의 힘이 필요할 것 같다. 제도혁신의 시간인 줄 알면서도 제도실천만으로는 기록혁신을 안전하게 운송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안다. 이 글이 요지로 삼는 담론 실천은 이런 문제의식에 나왔다.

논의를 본격화하기 전에 문제의식을 심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러시아의 문호 안톤 체호프의 단편소설로 서두를 연다.

부부가 거실에 들어갔다. 낡은 세월이 있었다. 이끼와 습기 냄새, 짹짹 도망치는 쥐들, 옛 문자와 오래된 그림, 그리고 벽에는 선조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 날은 크리스마스 밤인데도 음산했다. 겨울바람은 신음했고 벽난로의 굴뚝에선 누군가가 구슬피 울고 있었다. 남편이 구석에 있는 거울을 가리키며 증조할머니 얘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엄청난 값에 거울을 구입해서는 낮이고 밤이고 거울만 들여다보았다. 심지어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거울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거울을 관에 넣어 달라는 유언까지 남겼다. 그러나 할머니 유언을 집행할 수는 없었다. 거울이 의외로 커서 관에 같이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 그러셨을까? 다른 거울은 없었을까? 여기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남편이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아내는 아랑곳 하지 않고 거울을 집어 들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발에는 경련이 일어났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폭 쓰러졌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거울을 가져다달라며 식음을 전폐했다. 할 수 없었다. 남편은 불길한 마음을 누르며 아내에게 거울을 가져다주었다. 드디어 거울을 손에 잡은 아내는 할머니처럼 밤낮으로 거울만 들여다보며 지냈다. 아내는 침대에서만 밥을 먹어도 만족했고 마당에 핀 꽃을 보지 못해도 불행을 몰랐다.

10년이 지났다. 남편도 자신의 무심함에 미안했던지 아내 곁으로 다가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남편도 10년 전의 아내처럼 비명을 질렀다. 비밀이 있었다. 거기에는 평생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여자가 우아하게 웃고 있었

다. 현실의 아내와는 판판인 여자가 거울에서 남편을 반기고 있었으며 그 옆에는 평생 마주한 적이 없었던 아주 잘생긴 남자가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와 남편은 거울 속에서 다정하게 서로 속삭였다. 거울은 삶을 위한 도구에서 별천지로 변태(變態)했다(안톤 빠블로비치 체호프 2004, 7-15).

최종보고서에는 과제별 ‘조치사항’이 있다. 조치사항은 거의 대부분이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공공업무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은 오히려 관료제를 강화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데이비드 그레이버 2016). 이번 기록혁신에서는 관료제 강화의 위험성을 ‘적폐’라는 좁은 프레임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적폐’가 아닌 곳에도 관료제는 있고, 그런 관료적 힘은, 민주주의를 위한 아카이브라는 지평에서는 경계 대상이다. 제도혁신이 기록혁신의 전부가 될 수가 없다. 한 눈은 적폐를 보더라도, 또 다른 한 개의 눈으로는 10년 동안 방치했던 곳에서 자란 가능성의 씨앗을 봐야 한다. 혁신의 과정과 결과를 법·제도로 집약하기에는 기록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상당부분 달라졌다. 훌쩍 커버린 아이에게 너무 작아진 옷처럼 ‘공공업무 + 법·제도적 접근’만으로는 사회적 요구를 담을 수 없다. 탈정(脫井)의 시도가 필요하다.

이번 기록혁신은 참여정부 기록혁신에 이은 두 번째 기록혁신이다. 당시 기록혁신 때는 제도혁신이 차지하던 비중이 거의 전부라 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그 때는 허허벌판에서 국가기록관리의 골격을 형성할 법제를 정비하던, 법제 건설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번 기록혁신에는 다른 시간표도 필요하다. 담론 건축의 시간도 포함되기를 기대해본다. 담론의 공간에서 아카이브를 말하는 이유이다. 2장에서는 기록제도를 다룬다. 3장에서는 기록언어를 살핀다. 4장에서는 기록관행을 논의한다.

2. 기록제도

1) 사회제도

담론(discourse)은 19세기를 전후해 특정한 전문지식을 산출하는 구성체로 등장했다. 정신병리학, 임상의학, 법의학, 형법학, 정신분석학, 자연사, 경제학 등이 역사적 출발점을 이룬다. 담론은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해서 전문지식을 만든다. 대상화는 어떤 존재를 사유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재료로 삼는 것을 말한다(미셸 푸코 1998). 인간에게서 뽑은 피를 인간에게 다시 돌려주는 피의 순환성처럼, 담론도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삼아 전문지식을 산출한 후 일정한 사회시스템을 통해 되돌려 적용하는 방식으로, 순환된다.

담론은 사회제도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의료제도는 법률(의료관련법)－의과대학－병원－의료진－의학지식－학회－이익단체－학술지－의료산업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의학담론으로 구성된다. 의학만이 아니다. 사회과학 계열이나 신생 분야는 담론으로 출현해서 사회적 삶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사회제도로 자리를 잡는다. 전문영역이 구축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내외적으로 언어가 순환하면서 사회제도로써 특정 담론이 확고해진다(미셸 푸코 1998; 사라 밀스 2008). 기록관리 역시 이런 담론의 계보에 속한다. 기록관리도 법률－기록대학원－아카이브－기록전문가－사전－단행본－학회－협회－학술지－기록산업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담론이다.

기록담론은 최근 10~20년 동안 한국사회의 기록제도를 형성했다. 1990년대까지 우리 사회에는 이런 사회제도가 없었다. 기록물은 물론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유지 관리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기록담론은 없었다. 기록대학원 강의실에서 아카이브 세미나가 진행되고, 시장에서 기록전문 기업이 영리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고, 기록관리직이라는 직업이 생겨 이익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며 자기 목소리를 내고, 미디어가 기사를 통해 또는

웹에서 수많은 댓글이 생기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아카이브가 독자적인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검찰이 아카이브를 압수수색해서 범죄를 찾아냈던 적은 없었다. 기록담론이 사회 곳곳에서 기승전결로 일었다 사라지면서 사회적 사건을 만들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각각 고고학적 발굴을 요하는 상이한 지층이다.

2000년대부터 사회구성원들은 기록담론의 공간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다. 사람들은 기록이 중요하다 말하면서도 아카이브를 사회제도로 인식하기보다는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는 곳(문서고, 자료관, 기록보관소, 기록보존소)으로 이해한다. 낡은 이름은 아카이브의 사회적 인식이 아직은 낮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이다. 사람들은 기록 관리 종사자를 만나면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쌓여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를 묻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방법론을 배우려는 열정을 보인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문제와 정치와 사회의 문제를 탐구하는 대화는 흔치 않다.

기록담론은 신생담론이다. 아직은 사회제도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는 못했다. 사회적 발언권도 미약하다. 사회제도로 인정받고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술이나 도구 정도로 취급된다. 국가기록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사회적 위상이 없어 기록에 관한 사회적 결정, 정치적 결정을 하지 못한다. 공공기록관의 기록관리직도 행정직이 주도권을 갖는 행정기관에서 제 자리를 잡지 못했다. 기록학도 대학에서 독자적인 학문체계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기록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제도적인 접근만으로는 혁신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도구적 경향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신생담론의 과제는 도구적 접근을 개념적 접근으로 전환하는 것일 것 같다. 기록제도가 일정한 전문영역을 차지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제도라는 개념을 경작해야 한다.

2) 회복적 정의

담론의 라틴어 어원에는 ‘전환’(discursus)이라는 뜻도 들어 있다. 신생담론은 전환투쟁을 겪으며 안정적인 사회제도로 자리를 잡는다. 이 부분은 사회적 영향력의 확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권력과 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권력의 측면이다. 지난 10년, 국가기록관리에 부정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최종보고서는 이런 현상을 ‘기록관리상에 나타난 폐단’이라고 보고, 10개의 주요 사안을 꼽았다. 그 중에는 제16대 대통령기록물 유출논란,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 사건,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지정 및 이관 사건 등이 있다. 기록관리가 지배권력의 통치술로 악용되었던 것으로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던 사건들이었다. 국가기록원이 노무현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지배권력의 통치도구가 되면서 아카이브의 사회적 영향력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초라해진 아카이브가 누구에게 떳떳하게 사회적 의미를 말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혁신TF가 폐단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자고 한 것은 올바른 방향설정이라 하겠다.

최종보고서에는 〈국가기록관리폐단 기초조사에 따른 주요 권고〉가 들어 있다. 첫 번째 권고는 진상규명이다. 혁신TF는 제16대 대통령기록물 유출논란,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생산·관리·공개 등 2008년 이후 벌어진 기록사건에 대한 조사, 특히 기록의 산일을 막고 증언을 신속히 수집할 것을 권고했다. 두 번째 권고는 수사의뢰이다. 혁신TF는 ‘15년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당시 국가기록원장을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증거 확보를 위해 당시 원장, 부장, 과장, 팀장, 담당자 등이 사용했던 PC를 원내에서 추적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법에 의하여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TF의 권고는 기록관리 독법이 아니라 다른 독법으로 읽어야 한다.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사법적 측면의 정의(Justice)의 시선이 좋을 것 같다. 정의는 시정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되는데 사법작용은 시정적 정의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시정적 정의에는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가 있다. 혁신TF의 권고를 응보적 정의에서도 살펴보고, 회복적 정의에서도 살펴본다.

진상규명, 특히 수사의뢰는 사법적 행위이다. 사법기관은 사회적 가치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왜곡 분배될 때 원상을 회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이뤄지게 하는 사회적 기능이다. 가치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폭력이 발생하면 사법기관은 정의의 이름으로 응징한다. 이것이 응보적 정의이다. 사법에서 응보를 인정하는 밑바탕에는 가치 침해이나 왜곡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이 분배질서를 해친 것임을 당사자와 사회구성원들에게 알려서 분배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이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사법작용은 우선은 응보적 정의를 실천한다. 국가기록원은 혁신TF의 권고를 집행해서 응보적 정의를 실천하는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 사람은 그로 인한 이득을 보았다. 그런데도 상응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부당한 이득을 인정하는 것이다. 혁신TF의 권고에 따르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확대하는 길이다. 기록의 사회적 가치가 비록 부당하게 침해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분야에서 응보적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알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관계의 측면이다. 회복적 정의론에 따르면 범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하워드 제어 2011; 하워드 제어 2017). 우선은 범죄의 직접 당사자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은 진상규명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과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진술한 사과를 해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이 제주 4·3 70주년 행사장에서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자행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했다. 이미 70년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 직접적 가해자는 아니다. 그러나 국가의 영속성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었다.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자행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도 자체적인 진상규명과 사법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가해 당사자가 직접 하기 힘든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후임자가 국가아카이브의 영속성에 기대어 사과를 하는 것이 문제를 더 쉽게 푸는 방법이기도 하다.

범죄가 발생하면 직접적 피해자와의 관계만 침식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는 다른 사회구성원과의 관계도 침식한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회구성원과의 관계회복에도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범죄로 인해 나타난 부정적 결과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일련의 과정에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의를 실행하는 책임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다(하워드 제어 2011; 하워드 제어 2017). 국가기록원이 혁신TF를 구성한 것,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기록관협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 혁신TF가 기록관리 전문가로만 구성되었다는 인적 구성상의 한계, 최종보고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2018년 3월말 현재), 공공기록관 기록관리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이 시간의 제약이나 이런저런 행정적 제약을 내세워 종전과 같이 의견수렴 정도로 이 사안을 풀어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행정적 태도(관행적 태도)는 기록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혁신TF는 기록을 확보하고 증언을 수집할 것을 권고했다. 전자는 응보적 정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증언 수집은 응보적 정의보다는 회복적 정의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담론의 공간은 증언, 진술, 논의, 발언, 토론, 대화 같은 언어적 공간이 만든다. 증언은 사실의 수집에 한정되지 않는다. 증언이 진실일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정서적 역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당시 사건에 관한 정보와 사실의 수집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와 이미지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런 변화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은 문서화 할 수 없다. 문서 형태로 기록할 수 없는 영역, 또는 비기록화 영역에서도 기록활동은 필요하고, 그런 계열의 기록활동이 추구하는 가치(이 글에서는 회복적 정의)는 사회적 관계를 강화한다.

회복적 정의의 목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방식은 자발적 책임이며, 주체는 공동체이다. 반면 응보적 정의는 가해자 처벌이 목표이고, 방식은 강제적 수형책임이며, 사법당국이 주체이다. 두 계열의 정의를 구성하지만 목표와 방법, 주체에서는 대비된다(하워드 제어 2011; 하워드 제어 2017). 이런 대비를 바탕으로 회복적 정의를 위한 숙의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해본다. 우리 사회는 이미 숙의제도를 중요한 사회제도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성공한 사례가 있고 점차 확대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숙의제도는 정의를 실행하는 책임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점에서 기록관리의 정책화 과정에서도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다. 혁신TF에서 지적한 ‘기록관리 폐단’은 사회적 문제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피해를 겪었고 이해관계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보공개소송, 헌법소원, 토론회 등의 사회적 논의가 이를 뒷받침한다. 기록혁신은 이런 사회적 논의를 일회성 논의로 보서는 안 된다. 개방과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숙의제도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기록정책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갈등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민주주의의 길이 아니다. 숙의제도는 갈등관리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것은 사회구성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전문적인 분야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전문지식과 판단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정책의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시민(주권자)의 판단도 중요하다. 다른 분야의 전문역량도 논의에 가세해야 한다. 사회

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이고 삶의 기반이다. 아카이브가 갈등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과정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기록혁신일 것 같다.

기록관리가 사법작용은 아니지만 기록관리도 회복적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카이브에 어떤 기록물을 수집해서 보관하느냐 하는 것은 아카이브가 사회구성원과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수자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은 아카이브가 소수자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삶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는 이런 신뢰의 관계망이 확대되는 것이 핵심적이다. 아쉽게도 최종보고서에는 이런 논의가 빠져 있다. 혁신TF의 활동범위가 애초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참여 정부 기록혁신에 비해 후퇴한 면도 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록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공공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서울기록원에서 잡은 방향처럼 기록관리를 지원하는 정책도 좋은 방법이다. 단지 기록물의 수량을 늘리는 기록관리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간에서 아카이브가 사회구성원들과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을까 하는 흐름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록이 아카이브를 통해 공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닐 것 같다. 그것은 사회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것, 또는 시민의 권리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는 부당하게 닳치는 운명에 저항하는 힘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에게 닳치는 폭력, 자신이 속한 공동체(폴리스)에 닳치는 폭력에 맞서는 힘을 정의라고 불렀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정의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라는 뚜렷한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록관리는 아직 민주주의를 기록의 길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기록이 해야 할 사명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최종보고서에도 기껏해야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한 기록관리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이런 도구적 태도가 기록제도를 정립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

닐까. 기록제도를 정립하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할 것이다.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같은 논의는 이제 행정관리-사무관리 지층에 남겨두어야 한다. 아카이브는 자기 지층에서 입장을 세워야 한다. 자기 지층에 어울리는 언어를 써야 한다. 아카이브가 인간과 시민, 민주주의에 복무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말하고 규범으로 만들어야 한다.

3. 기록언어

1) 담론의 공간

담론이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였다. 당시 담론은 마르크시즘에 대한 비판으로 통용되었다.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후, 새로운 철학적 흐름이 변증법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유물론은 낡고 반동적인 실천으로 비판을 받았다. 담론은 새로운 철학 계열에서도 사회실천적인 면에서 혁신적이었다. 담론은 본래 학문적 체계를 갖춘 논증적 언어, 또는 방법적 질서에 따라 제시된 판단들의 체계를 의미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등장해서는 변용을 겪으며 제 나름의 생애를 살고 있다.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쓰이면서 화폐의 통용처럼 일상에 파고들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언어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론의 라틴어 어원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님’(discursus)의 뜻이 들어 있다. 담론은 이제 일정한 논리를 갖추고 무언가를 주장하는 일상적인 언어부터 수학이나 이론물리학처럼 가장 엄밀할 수 있는 이론과학적 명제까지 포괄한다.

인간의 언어에는 다른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리모콘을 이용하면 TV를 자유자재로 볼 수 있다. 아기도 음성기술(울음)로 물체(양육자)를 움직여 용변도 처리하고(양육자에게 기저귀를 갈게 하는 것), 먹이도 조달한다(양육자에게 젖을 먹이게 하는 것). 비유가 작위적으로 읽힐 수도 있

졌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언어에는 타인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직접 심어줄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글을 읽고 그와 논쟁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타인의 생각을 자기에게 심는다(이규호 1968). 물론 유난히 유아기가 긴 포유류 동물인 인간에게 육체적 접촉이 주는 친밀함과 포근한 안정감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관계는 언어로 상호작용하는 언어적 관계이다. 스티븐 핑거는 인간에게는 ‘언어 DNA’가 있다는 주장까지 편다(스티븐 핑거 2008). 언어적 관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반려동물에게도 이런 관계를 적용한다. 반려동물에게 말을 하면서 왜 말을 알아듣지 못하냐고 꾸짖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동물에게 어떤 관념을 심어줄 수가 없다. 극히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인간에게 언어가 있다면 개나 고양이에게는 냄새가 있다.

철학은 언어를 합리적 사유에 적합하도록 다듬는 작업을 수행했다. 플라톤은 로고스의 본성에 따라 참된 언어를 조직하려고 힘썼다. 20세기 언어학은 언어의 자의적이고 자율적인 체계인 랑그에 주목했다. 언어학은 다양한 개인차(파롤)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유는 랑그에 의해 지배된다고 본다. 이런 논의에 따르면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다. 거꾸로 생각이 언어에 의해 조직된다. 생각은 내적 언어로 구성된 관념이다(엘리자베스 클레망 1996). 언어학은 언어를 사회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는 공간으로 담론을 살펴본다면, 담론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언어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담론은 특히 특수한 제도나 권력기관과 연결되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요컨대, 담론은 사회제도와 연관된 언어의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 담론의 사회사가 사회제도로써 기록 제도를 설명하는 데 유용했다면, 담론의 언어적 특성은 기록언어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미셸 푸코 1998; 사라 밀스 2008; 허경 2016).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법·제도는 아카이브를 기록물을 관리하는 곳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담론의 공간에서 아카이브는 “기록물을 포함한 언어적 특성”이 관리되는 존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아카이브는 “특정 시기, 특정 사회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위와 형식을 정의하는 일련의 규범”(미셸 푸코 2000; 사라 밀스 2008)이다. 담론의 공간에서 아카이브의 역할은 사회구성원이 기록제도와 연관을 맺으며 사용하는 언어의 출처가 된다. 또는 언어를 만드는 물질이 된다. 물질은 바위와 같은 물체와 다르다. 중력이나 전자기력처럼 우주에 작용하는 힘은 형태를 갖춘 물체는 아니지만 물체들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이다. 아카이브는 기록관리자, 건물, 시설, 기록물 등으로 구성된 물체가 아닌 곳에서도, (비물체적인) 물질이라는 현실에서 기록작용을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아카이브라는 물질(담론의 공간)을 활용해서 기록활동(언어작용: 언어의 산출, 교환, 정서화, 의미화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카이브에서 기록물을 들고 나올 수는 없다. 아카이브 이용자는 ‘아카이브가 관리하는 기록물’과 ‘그것을 권위가 있는 절차에 따라’ 보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수행한다. 정치권, 언론, 연구자, 공무원, 예술가, 학생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기록물이 아니라, 사실은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한다. 비유를 들어서 비교 설명해보면, 인간과 달리 아카이브에서 서식하는 고양이, 비둘기는 자신들이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곳으로 아카이브를 이용한다. 그러나 인간은 담론의 공간인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기록언어와 기록행위를 산출한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아카이브는 전혀 다른 장소가 된다. 담론의 공간에서 아카이브 이용자는 말하고 싶은 언어를 수집하고 조직해서 누군가에게 말한다. 아카이브는 단순히 기록물이 보관되고 유통되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새로운 종류의 언어가 유통되는 극장, 시장, 광장이다.

대형병원에는 의무기록실이 있다. 진료기록이 관리되는 곳이다. 보험회사와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이곳에서 자기 진료기록을 복사한

다. 의료사고가 생기면 이곳은 압수수색의 장소가 된다. 그러나 담론의 공간에서 병원은 아카이브가 된다. 병원은 사회제도인 의료제도의 한 장소가 된다. 여기에서는 복잡한 담론작용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상적으로 전개된다. 의사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사람은 환자이다. 의사는 진료실에서 의료적 장치를 이용해서 환자를 대하고, 환자에게 의학적 처치를 가한다. 이 사람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의학의 언어로 구분되는 증상에 따라 어떤 종류의 환자로 분류되어 그 다음의 담론과정에 들어간다. 그는 입원을 할 수도 있고,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퇴원을 할 수도 있다. 입원을 하면 회진을 하는 의사에게 의학적 언어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의사와 환자는 담론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진료실-의료지식-의료장치-의학적 처치(진단서 발급, 입원, 수술, 투약)로 계열화되는 담론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의사와 환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롭게 담론을 실천한다. 의무기록실은 단순한 기록보관소가 아니다. 그곳은 의학담론이 일상적으로 실천되는 담론의 공간이다.

담론은 정의되기보다는 기술된다는 점,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확장-축소-배제-변형되면서 생애주기를 형성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담론의 공간에서 아카이브는 단순히 기록물을 보유하는 곳이 아니다. 아카이브는 기록물이 관리되는 물체가 아니다. 담론의 공간에서 아카이브는 정치, 경제, 교육, 의례 등 다양한 사회생활이 펼쳐지는 곳이다. 사회구성원들은 아카이브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이런 경험의 반복이 아카이브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을 달라지게 할 것이다.

2) 기록언어의 양상과 의미

혁신TF는 4.16 기록을 혁신의 테이블에 올리지 못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의제 선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 낙관도 있지 않았을까. 마치 개복수술 후 수술 자리를 꿰매면 안의 장기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공공기록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면 4.16 기록에 연대와 협력의 손을 내미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 그러나 국가기록원이나 다른 공공기록관에서 4.16 기록에 연대와 협력의 손을 내미는 것이 장기가 제 위치를 찾아가듯이 저절로 정상화 된다는 보장은 없다. 공공업무 기록관리가 우선이라는 완고하고 고정된 틀은, 아들이 딸보다 우선이라는 인식과 제도처럼 더 이상 통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번 제도혁신은 공공업무의 기록관리에 방점을 두었다. 이런 제도혁신과 사회적 사건(세월호 참사, 강남역 2번 출구 살인사건, 가슴기 사건, 용산, 평택 사건, 2017년 촛불사건 등)의 기록화를 직접 연결시키기는 힘들 것 같다. 제도혁신이 이뤄지면 사회적 사건의 기록화도 진행될 것이라는 인과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소를 잡는 도구와 야채를 써는 도구가 같을 수는 없다. 다른 계열의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다. 이 글에서는 담론의 공간으로 장소를 옮겨 아카이빙을 해보자는 제안을 해본다. 구체적으로는 편지(기록형식)와 고백(기록언어)이다.

세월호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쓴 편지가 ‘그리운 너에게’라는 제목을 달고 출판되었다(4.16 가족협의회 · 4.16 기억저장소, 2018). 편지를 쓴 엄마 기록자는 말할 것이 있다고 했다. “이 책을 읽은 뒤 부모의 슬픔을 느끼는 데 그치지 말고 기억하고 행동해주세요. 인터넷 검색 한 번, 청와대 청원 한 번 하는 행동이 진상규명의 출발이 될 수 있으니까요.”(한겨레, 2018.4.13). 이 말을 한 사람은 이지성이다. 이지성은 ‘도연 엄마’다. 자기 이름을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어야 살 수 있는 사람에 속하는 이 사람은 현재 4.16 기억저장소장이다. 그리고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엄마들이, 아빠들이, 저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자식들에게 쓴 편지 110통을 모아 만든 기록이다. 110통 편지의 수신처는 아마도 기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 그러니까 110개의 심장 속일 것 같다. 그런데도 기록을, 슬픔을, 언어를 심장에만 넣어둘 수가 없어 책으로 펴낸 것 같다.

기록자는 기억하고 행동하자고 하면서도 치유나 트라우마 같은 정신의학

계열의 이유를 들지 않았다. 치유는 입에 담지 말라고 한다. 어떻게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럴 수 있겠냐며, 염치가 없어서 감히 그럴 수 없다고 엄마 기록자들은 말하고 아빠 기록자들도 말한다. 그러나 이유가 없는 행동이 진상규명의 출발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책과 독자 사이, 4.16과 사회구성원 각자의 사이에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예은 아빠’, 그리고 4.16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유경근은 ‘세상 끝의 사랑’(CBS 팟캐스트)을 진행한다. 세상 끝의 사랑은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4.16 등 사회적 참사를 겪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예은 아빠의 인터뷰를 전하는 한 신문은 “유가족들이 참사 피해 경험을 공유해 기록으로 남기면,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한겨레, 2018.4.13)이라고 한다.

공유라는 말에 눈길이 간다. 공공기록은 무엇을 공유할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대대손손 이어질 역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공공기록은 무엇을 공유하고 있을까? 사방을 둘러보았다. 무언가 하나라도 보이면 그것을 들고 과장법을 동원해서 말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단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필자가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공공기록도 사실은 상당한 것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4.16 기록에서 공유를 말한다면 사실보다는 정서를 공유한다는 점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4.16 기록은 슬픔을 공유한다.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은 특별한 친구가 되거나 연인이 된다. 무언가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공유하는 것의 성격에 따라 그 나름의 고유한 공동체가 된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기록작업에 동참했다.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전해져 4.16 기억을 공유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건네는 것 같다. 공유란,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한 후에는 행동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다.

110개의 심장이 쓴 편지는 고백이었다. “죄책감을 아이들에게 고백”한 것이고, “기억하고 행동하면서 부정의한 사회를 바로잡으려 한 사람들에게 고백”(한겨레, 2018.4.13)한 것이었다. 후자는 고마움과 연대의 윤리적 가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굳이 출처분류, 기능분류, 주제분류가 아니어도 인간을 이어주는 가치를 통해서도 기록은 분류될 수 있다. 저 세상으로 먼저 간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기록)가 동시에 함께 행동하며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며 보내는 편지(기록)가 되었다. 기록이 문서철이나 서버에만 존재해야 기록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판물 형식으로, 서점에서 방에서, 카페에서 기차에서, 웹(전자출판)에서, 다양한 일상의 장소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기록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며 담론의 공간에서 사회구성원이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고백을 뜻하는 라틴어 *professio*(프로페시오)는 공언, 선언, 표명, 공약, 고백의 뜻을 함께 품고 있다(파커 파머 2014).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은 사회적 맥락에 두루 적용되겠다는 의지이다. 고백도 그런 것 같다. 고백은 여러 맥락이 서로 협력하며 고백의 의미를 두텁게 했다. 두터움이 주는 미덕은 각자 자신이 필요한 곳에서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일 것 같다. 예를 들어, 신앙고백이나 수도자의 서원도 같은 말을 쓴다. 신앙고백은 다음을 의미하지 않을까. 신을 어떻게 믿는지 고백하지 않고는 신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교회 예배시간에 회중을 대표해 신앙고백을 하는 신앙인처럼,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연인 사이에 은밀히 속는 사랑고백처럼, ‘고백하는 기록자’는 자신이 믿는 기록을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는 사람이다. 4.16 기록자들은 ‘고백하는 기록자’로서 자신이 마음 다해 믿었던 기록의 형식과 의미를 표현했다.

4.16 기록이 가르쳐준 한 가지는 고백이 기록의 요소라는 점일 것 같다. 기록의 고백성, 예를 들어 기록으로 고백하는 의례는 인간에게는 꽤 오래된 특성이다. 인간은 기록을 통해 고백하며 오랜 시간 이 지구에서 살았다. 기

록이 진실을 말할 때는 고백의 순간일 것 같다. 문서에는 진실이 없다. 개조식 문장이 나열된 문서에는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는 글에서 진실을 읽기는 힘들다.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문서의 효용이라고 해도 그런 사실들이 어떤 구체적인 맥락을 갖는지는 주어가 통솔한다. 그러나 인간이 빠진 공문서에는 주어가 없다. 문서에는 이상한 침묵이 흐른다. 법률에 이런 것이 있다는 표현은 있지만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기는 어렵다. 문서가 법률과 행정의 의지를 표현한다면, 편지는 인간의 진실을 고백한다. 수신자와 발신자는 진실의 관계에 주소를 둔다.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고백한다. 고백은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요소가 아닐 것 같다. 내밀하고 사적인 고백은 물론 있다. 그러나 고백의 범위가 거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16 기록은 공적 고백에 대해, 사회구성원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공유할 고백에 대해 말해준다. 그리고 고백이 기록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점도 말해준다.

담론은 자격증으로 관리되는 전문가 집단이 유지한다.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자격증은 전문적인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제도의 효과이다. 전문가 집단은 사전에 만들어 중심을 잡고 연구논문으로 언어의 의미를 심화한다. 자격증은 해당 공동체가 정립한 전문적인 언어를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언어에 대한 권위의 출처가 된다. 전문가는 그가 속한 집단의 내부에서 통용되는 전문적인 언어를 쓰면서(글을 쓰고 말을 하면서) 전문가로 활동한다. 그의 생각은 백지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다. 그의 생각은 순수한 생각이 아니다. 그의 생각은 전문화된 기록 언어로 구성되었다. 그의 생각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만들어진 편견(일부를 이해하는 의견)이다. 전문가는 지식인과 다른 개념이다. 전문가는 자신의 행동을 전문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담론의 세계는 동일한 언어를 쓰는 집단의 거주지이다. 자격증으로 통제되는 전문적인 언어가 공동체의 언어이고, 그 언어가 통용되는 범위가 공동체의 범위이다.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다른 공동체로 분화하게 된다. 기록공동체는 법·제도를 공유하는 제도적 공동체보다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담론 공동체이다.

기록공동체는 기록언어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 관심사를 돌려서 언어적 관계에서 사는 인간에 주목한다면, 어떤 종류의 아카이브가 인간에게 필요한가를 사유하게 된다. 기안하고 결재하고 등록하는 문서형식이 아니어도 기록은 각자의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형식으로 존재한다. 사회적 사건, 공동체, NPO, 일상, 동물, 소수자 등 인간의 삶이 있는 곳에서 최근 들어 부쩍 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록이 아니라면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피차 기록이 필요하다며 광장에서 만나고 시장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이 유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언어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기록언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기록의 범위를 넓히는 담론실천이다.

4. 기록관행

1) 사서와 도서관의 관행

사서는 정사서(1급, 2급)와 준사서로 구분된다. 이것은 사서 자격을 법규로 구분해서 자격증으로 통제하는 사서분류법이다. 그러나 정치적-윤리적 관점에서 구분하면 다른 분류법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사서분류법은 도서관협회 자문회의에서 진지하게 들은 분류법이다. 미국에서 청소년에게 봉사하는 한 사서가 사서분류법을 고민하다가 ‘평범한 사서 좋은 사서-위대한 사서’의 분류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평범한 사서는 장서량을 늘리는 사서, 좋은 사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서, 위대한 사서는 공동체를 만드는 사서이다. 브라운(논의의 편의를 위해 그에게 브라운

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의 분류법은 자신이 어떤 사서인가 하는 윤리적 질문과 그렇다면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노력을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하는 정치적 행동을 위한 윤리적-정치적 분류법이지 않을까.

브라운은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 자신과 사회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기를 욕망했다. 청소년 시기에 양서를 많이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브라운이 좋은 사서를 고민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책이라는 사물에 유익한 것들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서관 열람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닌, 다른 사회적 독서행위는 없을까. 만약 효과적인 방법을 실행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사서의 좋은 삶을 말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윤리적-정치적 자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브라운의 분류법에는 일직선 사다리 형태의 위계가 없다. 브라운의 분류법은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해 그린 나무구조(생명트리)와 유사하다. 브라운은 세 계열의 사서를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 안에 모두 품고 있다. 이것은 자신을 복수의 존재들이 연합한 존재로 설정하는 것인데, 각각의 존재는 자기 고유의 과정을 밟으며 진화한다. 브라운의 일상은 아버지-남편-아들 등 몇 개의 존재가 연합한 존재의 일상이다. 브라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평범한 사서-좋은 사서-위대한 사서로 복수의 직무를 수행한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복수의 존재들을 내적으로 연결하고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살아간다.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자연스런 행동이다. 오히려 이 중의 하나만을 법규적으로 제한해서 강요한다면 그 순간부터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상황에 처하는 당사자는 직업적 정체성을 새삼스럽게 고민하게 된다. 브라운은 세 종류의 사서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연결하고 작용시키면서 한 사람의 사서로 산다.

브라운은 평범한 사서로 직무를 수행하고, 좋은 사서를 고민하고, 한편으로는 위대한 사서를 욕망한다. 브라운의 욕망은 자본론 읽기 모임, 녹색평

론 읽기 모임 같은 정치적 공동체나 다양한 형태의 일상적 독서모임을 조직하는 것이 포함된다. 한 도시를 책 읽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은 브라운의 욕망을 닮았다. 그런데 이 글에서 말하려는 브라운의 욕망은 책을 둘러싼 관행에 의문을 품고 다른 관행으로 교체하려는 욕망이다. 브라운은 청소년이 어떤 관행에서 책을 읽어야 하는가를 물으며 책을 분류하는 방법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이런 노력을 미국의회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하는 관행을 바꾼 사건으로 바꾸어 설명해본다.

1960년대 말 동성애 인권단체는 동성애 혐오증을 불식하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끝없는 실패만 맛보았다. 그들은 인권을 짓밟는 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좌절의 시간이 컸다. 교사는 10대 동성애자를 상담하기 위한 교실을 열려고 했으나 오히려 동성애 옹호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기도 했다. 동성애 공동체의 원대한 목표는 요원하게 느껴졌다. 그 후 1970년대 초 미국도서관협회의 동성애자 해방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은 온건한 목표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의회도서관이 동성애자 해방운동에 관련된 책을 HQ71-471(성범죄와 비정상적인 성관계)에서 덜 경멸적인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것이었다. 놀라운 것은 의회도서관의 태도였다. 의회도서관은 1972년에 재분류 요청을 받아 새로운 범주인 HQ76.5(동성애, 여성 동성애-동성애자 해방운동, 동성애자 옹호운동)를 신설해 동성애 책을 재분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책이 서가에서 정리되는 방법에 대한 오래된 습관을 약간 수정한 것 정도였다. 그러나 사회적 파급효과는 엄청났다. 동일한 책을 이제는 범죄코너가 아니라 해방운동 코너에서 꺼내 읽을 수 있게 되자 책을 읽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이 시작되고 선거에도 출마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의회도서관의 재분류 결정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했다.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는 오랫동안 내부토론을 거쳐 동성애를 정신질환이 아니라 성적 취향으로 재분류했다(찰스 두히그 2012, 167-168).

미국 의회도서관은 책을 서가에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오래된 습관을 약간 수정했다. 책을 추가로 구입한 것은 아니었다. 책의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었다. 관행을 조금 바꿨을 뿐이다.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아도 괜찮았다. 관행은 제도혁신에 종속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사회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관행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관행의 변화, 또는 책의 재분류가 끼친 파급효과는 컸다. 사람들이 책을 읽는 태도가 달라졌고 책-도서관의 외부에서 사회적 변화가 생겼다. 선거 출마자가 달라졌고 의학적 진단이 달라졌다. 물론 의회도서관의 재분류가 갖는 함의가 크긴 크지만 그 시기 미국사회의 변화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또한 동성애 운동의 진전을 미국 의회도서관 재분류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의회도서관 사서들의 태도와 입장의 변화였다. 그들은 당대의 사회적 흐름을 도서관 안으로 수용해서 분류법을 살짝 바꾸었다. 이것이 동성애 공동체에 끼친 영향이 컸다.

이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관행을 바꾸려는 탈정(脫井)의 의지가 위대한 사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었다. 의회도서관은 사회의 변화를 도서관 안으로 수용했고, 책을 분류하는 관행을 바꾸는 행위를 통해 도서관의 업무경험을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흐름에 동참할 수 있었다.

2) 관행의 고고학

기록관리는 1999년에 시작되었고 참여정부 때 혁신을 통해 세를 키웠다. 그 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의문인 10년이 지났다. 기록물 수량,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 등 덩치는 커졌다. 비정규직의 확대가 문제이고 아직도 공공기록법이 정한 곳 중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고, '1인 기록관 체제'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양적인 성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양적 성장의 뒀안길에서 지난 20년을 뒤돌아본다. '기록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의문이다. 기록관리를 지배하는 힘

인 ‘문서관행’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기록관행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문제의식을 이야기 형식으로 짚어본다. 10대에 교도소에 들어가 50년 넘게 복역한 재소자가 모범수로 인정을 받아 가출옥을 했다. 그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했다. 점주는 경찰에 지속적으로 동향을 보고했다. 재소자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점주에게 화장실에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다. 허락이 떨어지면 화장실에 갔다. 50년 넘게 지시에 따르지 않고 행동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점주가 그를 불러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허락을 구하지 말라고, 오히려 성가실뿐더러 일에 방해가 되니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나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재소자인지 자유인인지, 교도소에 있는지 사회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그는 화장실에 가는 매순간이 고통이었다.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지만 사실 그는 교도소 밖에서 거주하는 자유인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행동하는 법을 망각했던 그는 결국 자살을 시도했다.

담론은 규범화된 관행과 함께 조직되면서 사회적 영역을 구성한다. 담론의 생산-배제-유통-교정-변형은 사회적 관행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미셸 푸코 1998; 사라 밀스 2008). 예를 들어, 기록대학원의 석사논문은 학술적 글쓰기의 관행으로 작성되고 제출된다. 석사논문 규칙이 학교마다 있고, 학술지도 논문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지만 그것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는 힘은 학술적 글쓰기는 이래야 한다는 관행(비명시적 구조와 규칙)이다. 구체적인 논문규칙은 이런 비명시적 구조와 규칙이 작용해서 제정된다.

기록관리가 담론으로 태동할 때 이를 통제된 사회적 관행이 있었다. 문서는 이래야 한다는 문서관행이 있었다. 문서관행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존재론적 구성이다. 공문서는 기안-결재-등록의 과정을 밟아야 문서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이영남 2004).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문서가 아닌 것으로 배제되었다. 등록시스템의 중요성과 사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런 존재론적 구성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

둘째, 정서적 구성이다. 문서는 1960년대에 태동하면서 효율이라는 정서

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효율은 기계의 정서이다.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1960년대를 지배했던 국가담론은 ‘국가재건론’이었다. 국가재건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처럼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다. 민주적 의사결정은 배제되면서 그 자리를 효율적 의사결정과 집행이 장악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이런 경향이 확대되면서 지속되었다. 효율은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듭하면서 행정상의 효율을 넘어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통치전략이 되었다(이영남 2004). 통치는 “지역과 성별 및 계층을 초월하여 원활한 소통구조를 만들고, 나아가 법과 제도라는 외형적 요소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심리적 기제 등의 내면적 요소를 통해 심층적인 의미에서 한 사회를 규율”(백승중 외 2010, 6)하는 것을 말한다. 효율이라는 정서가 행정기관을 넘어 사회 곳곳에서 작동되는 문서관행의 지배적인 규범이자 통치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

셋째, 기반적 구성이다. 문서의 기반은 행정이다. 1960년대 국가공무원제도가 형성되면서 현재의 행정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사회의 다른 영역에 비해 행정의 비중과 영향력은 과도했다. 일원적으로 진행되던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제도를 뒷받침했던 것은 발전행정(또는 능률행정)이었다. 그리고 발전행정(능률행정)을 뒷받침 했던 것이 현재와 같은 문서관리시스템이었다. 이처럼 문서관행은 196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되었으며 그 후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시적 통치전략이 되었다.

1987년 이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1999년 공공기록법이 제정되던 시기, 참여정부 혁신이 이뤄지던 2000년대 중반,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과연 1960년대 이래 형성된 문서관행이 변했을까? 아닌 것 같다. 최근 기록관련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 기록을 문서로 제한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효율은 여전히 강고하다. 이번 혁신TF의 구성, 운영, 논의과정은 효율적이었다. 효율은 내용적 측면에 관한 것이 아니다.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혁신TF도 효율 안에서의 기승전결이었을 것 같다. 천천히 숙고하며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아니었다. 효율과 숙고는

병행하기 어렵다. 이번 혁신TF는 기록을 숙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장의 생산공정처럼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일관공정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가져본다.

현재 기록관리직의 절대 다수는 행정에 속한다. ‘공공기관’이라는 범주도 행정에서 크게 벗어난 범주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실정을 놓고 말한다면 기록전문가의 진정한 정체성은 현재로선, 그리고 당분간은 ‘기록행정직’이다. 기록규범이 문서관행으로 지배되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 같다.

1999년, 기록은 사무관리규정에서 ‘출소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이 되었다. 그러나 사무관리규정(문서관리규정)의 규범이었던 문서관행은 공공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운영을 지배하는 규범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1990년대 법제정 시기, 참여정부의 기록혁신 시기에는 기록담론이 거의 전무하던 시기였다. 그런 역사적 시기에는 문서관행이 기록관리의 규범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사회제도로써 기록제도가 성장했다. 다시 기록혁신의 장도에 오르고 있다. 성장한 자기 모습을 봐야 할 것 같다. 새로운 관행을 모색해야 한다.

기록관행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잡아보았다. 첫째, 기록의 관계론이다. 최종보고서에는 기록이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들어 있다. 2부 2장의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항목에도 들어 있고, 3부 2장의 대통령기록의 성립 요건에도 들어 있다. 그러나 제도화가 가능한지 여부가 지배적이었던 혁신 TF 상황에서 결국 이런 문제의식은 제도화에 한해서 논의가 되었고, 장기 과제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등록이 되지 않는 문서가 미아가 되는 것처럼, 제도로 환원할 수 없는 논의는 미아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미등록 문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 동안 수차례 있었으나 아직 설득력 있는 대안은 없는 것 같다. 이유 중의 하나는 기록의 성립요건을 등록여부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현실과도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업무관리시스템 외의 웹 기록은 현재의 등록시스템

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기록이기에 다른 방식으로 아카이빙을 한다. 미등록 문서가 문제라고 처벌하고 교육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오히려 등록시스템을 경유하지 않는 기록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긴요한 기록혁신 방안이 될 것 같다. 대통령기록의 경우 서버기반의 생산 환경을 제안했다. 서버 기반의 생산 환경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웹에서 업무가 발생하고 관리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추세에 맞춰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록이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은 혁신TF의 문제의식만은 아니다. 기록학계에서도 기록의 성립과 범위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전자기록은 이미 기록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로 논의를 한다. 문서관행의 존재론은 기록의 실체를 전제하고 성립되었다. 그러나 전자기록의 등장은 오히려 이런 실체론이 허상이라는 점, 기록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관계론의 범주로 기록의 성립과 범위를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둘째,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서가 필요하다. 관계론의 범주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동물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기계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포함한다. 인권이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윤리적 가치로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16 기록을 이야기할 때 슬픔을 언급한 바 있다. 슬픔이 기록의 정서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용산의 기록화 작업에서 정동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이경래 외 2017),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에서 돌봄, 치유가 기록하는 이유로 언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언급했다. 이런 정서는 관계론의 범주에서 나온다.

셋째, 정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는 갈등관리가 핵심적이다(샤츠슈나이더 2008). 선거는 그 시기의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당은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각자 결집하며 모여드는 결사체이다. 보통 행정은 정치와 무관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허상이다. 담론의 공간에서 아카이브는 정치활동의 장이다. 사회적 갈등이 모이고 관리되는 곳이 아카이브이다. 사실 기록담론은 이미 정치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행정-법·제도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다.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에는 정치적인 기록관리, 갈등을 중재하는 기록관리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 행위는 관계론의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정치적 행위는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정치적 행위의 목표는 영향력-파급력 있는 조직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정치적 행위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되는 것이다. 정치적 행위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의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법과 제도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페르난도 사바테르 2006).

담론의 관점에서 관행은 주어진 고정불변의 틀이 아니다. 개구리 한 마리에게 100미터 깊이의 우물은 평생에 걸친 고정불변의 틀이다. 그러나 광화문에 촛불이 하나 둘 켜져 거대한 힘이 되었듯이, 기록담론도 기록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 거대한 힘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서관행을 규범으로 삼아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맺어나갈 수 없을 것 같다. 관행은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항적 전략의 시발점이자 저항이 생산되는 지점”이다. 관행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관행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문서관행에 대항하는 전략으로, 그리고 지배권력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저항하는 전략으로서 기록관행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5. 맺음말

최종보고서의 발간사에는 ‘이 활동을 통해 다시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마

련하고 싶었던 우리의 희망'(혁신TF 2017)이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우주선이 중력에 역행하며 우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강력한 추진 로켓이 필요하다고 한다. 참여정부의 기록혁신 작업을 통해 기록관리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기록관리가 방향을 잃고 '적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록 혁신활동이 도약의 발판을 희망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가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는 두 번째 추진로켓을 염원하는 것일 것 같다.

그러나 성공을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역사에는 언제나 실패가 아로새겨져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동일한 사건의 반복이기보다는 패턴의 반복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 이 의미가 역사에서 희망을 찾는 근거가 될 것 같다. 역사는 인간의 일인지라 물리법칙이나 기계작동과는 달리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을 씨앗으로 품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변화가 더디거나 어긋나거나, 때로는 역행하는 경우는 있어도 장강의 흐름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변화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다.

다른 계열의 기록 가능성을 찾는 작업에는 비평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비판과 비평은 다르다. 비판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비평은 새로운 차원을 찾는 것, 새로운 계열을 만드는 것에 복무하는 작업이다(야감벤 2015). 제도혁신을 제안하는 목소리, 그 제안과 제안의 집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만큼이나 제도혁신과는 다른 계열을 전망하는 비평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기록 혁신활동을 비평하는 이 글에서는 혁신TF의 최종보고서를 해석이나 보완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비평의 목소리가 나오는 출처로 삼아보았다.

제도혁신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문제의식과 기록관리가 아닌 기록담론의 관점으로, 혁신TF 활동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참고문헌〉

- 4.16 가족협의회·4.16 기억저장소. 2018. 그리운 너에게. 서울: 후마니타스.
- 고병권. 201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그린비.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2017.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미간행].
- 박상훈. 2011. 『정치의 발견』. 서울: 폴리테이아.
- 백승중, 박현모, 한명기, 신병주, 허동현. 2010. 『조선의 통치철학』. 서울: 푸른 역사.
- 신영복. 2015. 『담론: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파주: 돌베개.
- 이경래. 2015. 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의’: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기록학연구』, 46, 5-44.
- 이경래, 이광석. 2017. 동시대 ‘대항기억’의 기록화: 용산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3, 45-77.
- 이규호. 1968. 『말의 힘: 言語哲學』. 서울: 제일 출판사.
- 이영남. 2004. 『1950~60년대 국가행정체계의 재편과 성격』.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 이영남. 2016. 기록학과 윤리적 관점. 『기록학연구』, 52, 5-60.
- 이진경. 2006. 『철학의 외부』. 서울: 그린비.
- 허경. 2010. ‘해방’에서 ‘담론’으로: 대한민국 푸코 ‘수용 초기’ 지식인 담론의 한 변화. 『인문과학연구』, 27, 433-461.
- 허경. 2016. 『미셸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 읽기』. 서울: 세창 미디어.
- Charles Duhigg. 2012. The Power of habit, U.S.A.: Random House Trade Paperbacks.
(강주현 역. 2012. 『습관의 힘』. 파주: 깔리온).
- Chekhov, Anton Pavlovich . 1899. Doma s sobachkoy. Москва.: «Русская мысль»
№ 12. (오종우 역. 2004.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서울: 열린책들).
- Clément, Elisabeth . 1994. Pratique de la philosophie de a 'a z. Paris.: Hatier. (이정우 역. 1996. 『철학사전』. 서울: 동녘).
- David Graeber. 2016. The Utopia of Rules On Technology, Stupidity, and the Secret Joys of Bureaucracy. Brooklyn, New York.: Melville House Publishing. (김영배 역. 2016. 『관료제 유토피아: 정부, 기업, 대학, 일상에 만연한 제도과 규제에 관하여』. 서울: 메디치미디어).
- E.E. Schattschneider. 1960.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박수형, 현재호 역. 2008. 『절반의 인민주권』. 서울: 후마니타스).
- Giorgio Agamben. 2011. Stanze: la parola e il fantasma nella cultura occidentale. Torino.: Giulio Einaudi editore spa. (윤병언 역. 2015. 『행간: 왜 우리는 비현실적인 것에 주목해야 하는가』. 서울: 자음과 모음).

- Howard Zehr, 1990.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Indiana, Herald Press. (손진 역. 2011.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춘천: Korea Anabaptist Press).
- Howard Zehr, 2002.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Little Books of Justice & Peacebuilding Series) (The Little Books of Justice & Peacebuilding). PA.: Good Books. (조균석 역. 2017. 『회복적 정의를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대전: 대장간).
- Jimerson, Randall C. 2009.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N.J.: Archival Issues and Scarecrow Pres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 2016.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Michel Foucault, 1971. *L'ordre du discours*. Paris.: Gallimard. (이정우 역. 1998. 『담론의 질서』. 서울: 서강대 출판부).
- Michel Foucault, 1969. *L'archéologie du savoir*. Paris.: Gallimard. (이정우 역. 2000. 『지식의 고고학』. 서울: 민음사).
- Michel Foucault, 1976. *(La)volonté de savoir*. Paris.: Gallimard. (이규현 역. 2004.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파주: 나남출판).
- Palmer, Parker J. 1983.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Sanfrancisco.: Harpersanfrancisco. (이종태 역. 2008. 『절반의 인민주권』.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Pinker, Steven. 1994. *The Language Instinct*. N.Y.: William Morrow and Company. (김한영 역. 2008. 『언어본능』. 파주: 동녘 사이언스).
- Sara Mills. 2003. *Michel Foucault*. East Sussex.: Psychology Press. (임경규 역. 2008. 『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 서울: 앨피).
- Savater, Fernando. 1992. *Politica para amator*. Barcelona.: Editorial Ariel. (안성찬 역. 2006.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 정치학』. 서울: 웅진지식하우스).